

선 람	기관직장

제632호 2022년 2월 15일



익산시 시보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발행자 : 익산시청
발행처 : 홍보담당관

훈 령

- 익산시 훈령 제552호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

고 시

- 익산시 고시 제2022-21호 금마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법률 변경 고시 4

입법예고

- 익산시 공고 제2022-437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 5
- 익산시 공고 제2022-440호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
입법예고 10
- 익산시 공고 제2022-456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
- 익산시 공고 제2022-493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

공 고

- 익산시 공고 제2022-464호 공인 등록 공고 29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2년 2월 15일

익 산 시 장

익산시 훈령 제552호

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

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3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“3억원”을 각각 “5억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10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분야별 6급 이상 기술직공무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7급 이상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출석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1. 심의대상 중 총공사비 10억원 미만
2. 설계변경 대상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
3. 심의안건의 내용이 단순 공정으로 서면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설계의 경우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<u>3억원</u> 이상 100억원 미만공사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총공사비가 <u>3억원을</u> 초과하더라도 도급 예정금액이 <u>3억원을</u>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구조물의 모형과 소요자재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선정하였거나 관급자재대가 설계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사</p> <p>6. ~ 10. 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5억원</u> 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5억원</u>----- ----- <u>5억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그 중 5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 1. 2. (현행과 같음)</p>

3. 심의대상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.

4. 심의대상 중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5. 설계변경 대상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6. (생략)

② (생략)

③당연직 위원은 익산시에 재직 중인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6급 이상으로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따라 임명한다. <단서 신설>

④ (생략)

<신설>

3. ----- 5억원 -----

-----.

<삭제>

<삭제>

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. 다만, 분야별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7급 이상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출석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1. 심의대상 중 총공사비 10억원 미만

2. 설계변경 대상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

3. 심의안건의 내용이 단순 공정으로 서면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익산시 고시 제2022-21호

금마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법률 변경 고시

「물환경관리법」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금마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법률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15일

익 산 시 장

1. 목 적

최근 금마저수지의 천연기념물 '원앙'과 '수달' 서식으로 환경정책 재고와 익산시 관내 낚시금지구역 지정 법령의 일원화를 위함.

2. 적용 대상 : 금마저수지(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및 서고도리 일대 소재)

- ※ 상세주소 :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02-1번지 외20필지
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2-2번지 외44필지
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06-1번지 외 25필지

3. 변경 내용: 낚시금지구역 적용 법률

- 가. 종전 : 「하천법」 - 떡밥·어분 등 미끼 등 사용제한
- 나. 변경 : 「물환경보전법」 - 모든 낚시행위 제한

4. 기 타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82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**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환경관리과(☎ 063-859-549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익산시 공고 제2022-437호

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5일

익 산 시 장

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2. 주요내용

가. 특례보증 한도 증액(안 제5조 제3항)

-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함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(소상공인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) 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(부송동, 익산시청 임시청사)
소상공인과(전화 063-859-5775, FAX 063-859-5082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4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송윤주(063-859-577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익산시 조례 제 호

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4조 (생략)	제1조 ~ 제4조 (현행과 같음)
제5조(특례보증 지원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<u>3천만원</u> 이내로 한다. ④ (생략)	제5조(특례보증 지원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5 천만원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 ~ 제19조 (생략)	제6조 ~ 제19조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명	「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익 산 시 장 귀하

익산시 공고 제2022-440호

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5일

익 산 시 장

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반적 개인서비스 물가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,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- 나.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)
- 다.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)
- 라.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규정 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(참조 : 소상공인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·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할 곳 : (우)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(부송동)

익산시청 소상공인과(전화 859-5236, 팩스 859-5082)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담당자 (☎ 859-523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익산시 조례 제 호

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착한가격업소”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·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지정 및 취소)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」(이하 “지정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5조(사후관리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, 위생·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.

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제6조(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착한가격업소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
2.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
3.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·하수도 요금 보조
4.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
5.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
6.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
7.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물가모니터요원 운영)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(이하 “모니터요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
2.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, 위생·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
3.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
4.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,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)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, 위생·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익산시 공고 제2022-456호

「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5일

익 산 시 장

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7조의4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(※ 전라북도 법무행정과, 일자리경제정책관 -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)

2. 주요내용

가.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인원수 개정(안 제20조제1항)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상”으로 개정

나.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은 정관에 위임(안 제20조 ~ 제24조)

- 기존 협의회 위원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, 시행규칙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

3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은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(참조 : 소상공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·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할 곳 : (우)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, 익산시청 임시청사
소상공인과 (전화 063-859-5291, 팩스 063-859-5082)

라.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소상공인과(☎859-5291)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

익산시 조례 제 호

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전단 중 “**이내**”를 “**이상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그 밖에 **협약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**
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협의회)의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시 경제관광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: 2명 이상</p> <p>2. 도시·건축·디자인·경영·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: 2명 이상</p> <p>3.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: 4명 이상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20조(협의회)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이상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그 밖에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제2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<삭 제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<삭 제>

② 협의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협의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(의견 청취 등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24조(간사) 협의회에는 협의회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.

<삭 제>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19조의8(상권관리기구의 설치)

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 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, 상인,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

제7조의4(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)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,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익산시 공고 제2022-493호

「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5일

익 산 시 장

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원 대상에 결혼이민자 가정을 추가하여 양육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양육을 돕고 육아정보를 알려주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
- 나. 지원 금액을 증액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대상 확대(안 별표)
 - 양육공백 가정 ⇒ 양육공백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
- 나. 지원 금액 증액 (안 별표)
 - (첫째아) 50% ⇒ 70%
 - (둘째아 이상) 70% ⇒ 100%

3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.법인 또는 기관.단체 등은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(여성청소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.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.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할 곳 : (우)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(남중동)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(전화 063-859-5925, 팩스 063-859-5073)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(☎859-59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입법 예고명	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--------	----------------	--	------	--

	주 소	
--	-----	--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익 산 시 장 귀하

익산시 조례 제 호

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첫째아의 본인부담금 지원율(시비)란 중 “50%”를 “70%”로 하고, 같은 표 둘째아 이상의 본인부담금 지원율(시비)란 중 “70%”를 “100%”로 하며, 같은 표 중 “가정”을 “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양육공백유형”을 “지원대상구분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지원대상구분란(중전의 양육공백유형란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원대상구분	양육공백 (맞벌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한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결혼이민자 가정 <input type="checkbox"/>
------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</p> <p>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기준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본인부담금 지원율(사비)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첫째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둘째아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7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「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<u>가정</u>에 한하여 지원</p> <p>[별지 제1호서식]</p>	구 분	본인부담금 지원율(사비)	비 고	첫째아	50%		둘째아 이상	70%		<p>[별표]</p> <p>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기준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본인부담금 지원율(사비)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첫째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7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둘째아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10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「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<u>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</u>에 한하여 지원</p> <p>[별지 제1호서식]</p>	구 분	본인부담금 지원율(사비)	비 고	첫째아	70%		둘째아 이상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본인부담금 지원율(사비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첫째아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둘째아 이상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본인부담금 지원율(사비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첫째아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둘째아 이상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5%;">신청인</td> <td colspan="5" style="font-size: small;">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휴대폰번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width: 5%;">서비스이용대상자</td> <td style="width: 5%;">신청인과의 관계</td> <td style="width: 5%;">성명</td> <td style="width: 5%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신청인과의 동거여부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지원 유형 (담당자 확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5%;">양육공백 유형</td> <td colspan="5">맞벌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한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○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○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익 산 시 장 ²⁰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 귀하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font-size: x-small;">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						신청인	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					성 명		생년월일		휴대폰번호	서비스이용대상자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	신청인과의 동거여부	지원 유형 (담당자 확인)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양육공백 유형	맞벌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한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○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○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						『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익 산 시 장 ²⁰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 귀하						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	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5%;">신청인</td> <td colspan="5" style="font-size: small;">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성 명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휴대폰번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width: 5%;">서비스이용대상자</td> <td style="width: 5%;">신청인과의 관계</td> <td style="width: 5%;">성명</td> <td style="width: 5%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신청인과의 동거여부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지원 유형 (담당자 확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5%;">지원대상 구분</td> <td colspan="5">양육공백(맞벌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한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결혼이민자가정 <input type="checkbox"/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○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○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익 산 시 장 ²⁰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 귀하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font-size: x-small;">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						신청인	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					성 명		생년월일		휴대폰번호	서비스이용대상자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	신청인과의 동거여부	지원 유형 (담당자 확인)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지원대상 구분	양육공백(맞벌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한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결혼이민자가정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○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○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						『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익 산 시 장 ²⁰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 귀하						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					
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 명		생년월일		휴대폰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비스이용대상자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	신청인과의 동거여부	지원 유형 (담당자 확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양육공백 유형	맞벌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한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○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『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익 산 시 장 ²⁰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 명		생년월일		휴대폰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비스이용대상자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	신청인과의 동거여부	지원 유형 (담당자 확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첫째아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 구분	양육공백(맞벌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한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결혼이민자가정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○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『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익 산 시 장 ²⁰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 계 법 령

□ 아이돌봄 지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”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아이돌봄서비스”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아이돌보미”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.

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,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익산시 공고 제2022-464호

공인 등록 공고

익산시공인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2. 10.

익 산 시 장

(공인등록 내역)

구 분	공인명	인 영	규격 (mm)	공고사유	최초사용 연월일	관수부서
등 록	소상공인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		20×20	신조등록	등록일 2022. 2. 10.	소상공인과

